

파 주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시 보

제2530호

2026년 7월 3일 (금)

차 례

입법예고

- 파주시 공고 제2026-1911호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.. 1
- 파주시 공고 제2026-1935호 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
제정안 입법 예고 2

고시 · 공고

- 파주시 고시 제2026-27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4
- 파주시 고시 제2026-275호 경계소하천 관리에 대한 고시 5
- 파주시 공고 제2026-1915호 소하천점용허가 공고 9
- 파주시 공고 제2026-1944호 도로공사시행 허가【시도1호선 신설 및 확장(남측)】 공고 10
- 파주시 공고 제2026-1952호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
공고 11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: 파 주 시

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3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

2. 개정이유

-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금의 지속적 운영과 안정적 관리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23조)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7월 23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FAX 등

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생년월일·연락처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청(자치협력과 평화협력팀)

○ 주 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협력과(우 10932)

○ 연락처 : 031)940-2971/ 팩스 031)940-2979 / 이메일 sora7982@korea.kr

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

제정안 입법 예고

「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」를 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3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

2. 제정이유

- 「지방공기업법」(2026. 1. 1. 시행) 개정에 따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의 공정한 선임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지방직영기업·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 (안 제2조)
- 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3조 ~ 제9조)
- 회계감사인 선임의 원칙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10조)
- 회계감사인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11조 ~ 제13조)

4. 제정규칙안: 별 첨

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의 입법예고란에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7월 23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FAX 등

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생년월일·연락전화번호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청(예산법무과 재정관리팀)

○ 주 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예산법무과 (우 10932)

○ 연락처 : 031)940-5981 / FAX 031)940-4059 / tally82@korea.kr

하천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3일

파주시장

하천명	점용자	점용자 주소	목적·개요	점용위치	면적 (㎡)	점용기간
설마천	한국전력공사 파주지사	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60	전주설치	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193-13	0.24	'26.06.05.~ '30.12.31.
임진강	정*철	경기도 파주시 풀무골로 52번길 6-18	(추가)농업 용수 수중모터사 용	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322-1 외 12필지	25,150	'26.01.01.~ '30.12.31.
갈곡천	파주시장 (도로건설과)	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	장기미집행 도로개설	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259-3 외 4필지	559	'26.06.15.~ 영구
소리천	파주보건소	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13	기피제분사기 설치	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038	2.5	'26.06.19.~ '30.12.31.
문산천	파주시장 (체육과)	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	어린이 물놀이장 조성	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68-1 외 1필지	1,500	'26.06.23.~ '26.08.31.
소리천	(주)나*****지	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 1로 27	지반조사	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79	30	'26.06.29.~ '30.08.30.

경계소하천 관리에 대한 고시

파주시고시 제 2026-275호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3조의2(경계소하천의 관리)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와 경계에 위치한 적성천(소하천)에 대하여 「소하천정비법」 제3조의2 제3항에 의거 「양주시, 파주시 경계소하천 관리방법 협의서」를 고시합니다.

※ 경계소하천

소하천명	소 하 천 구 간		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연장(m)
	시 점	종 점	
적성천	양주시 남면 신암리 산82-3	양주시 남면 신암리 50-18	전체 1,865 파주시 (36)

2026 년 07월 03일

파 주 시 장

「양주시, 파주시 경계 소하천 관리 방법」 협의서

양주시와 파주시 경계에 위치한 경계 소하천의 효율적인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“양주시”와 “파주시” 간의 이행할 것을 상호 합의하여 협약을 체결한다.



제1조 (목적)

본 협의서(이하 “협의서” 라고 한다)는 「소하천정비법」 제3조의 2(경계 소하천의 관리)에 의거 양주시와 파주시의 경계 소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“양주시”와 “파주시” 간의 이행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대상 소하천의 명칭 및 범위)

- ① “양주시”와 “파주시”의 경계 소하천은 아래의 내용에 따른 구간으로 한다.

< 대상 소하천 >

소하천명	소 하 천 구 간		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연장(m)
	시 점	종 점	
적성천	양주시 남면 신암리 산82-3	양주시 남면 신암리 50-18	1,865

주) 양주시와 파주시의 경계에 위치하여 소하천 일부 구간(약 36m) 공유하고 있으나, 현재 파주시 소하천 미지정 구간임

- ② 「소하천정비법」 제3조제6항1)에 따라 적성천의 관리청은 “양주시”로 한다.

1) 「소하천정비법」 제3조 (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)

- ⑥ 소하천통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이하 “관리청”이라 한다)이 관장한다.

제3조 (소하천정비 종합계획)

- ① 경계 소하천에 대한 계획 규모 및 기준이 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.)은 관련 절차에 따라 다음 각항에 의거 수립한다.
- ② 적성천의 "종합계획"은 파주시에서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, 기 수립상 양주시 소하천으로 지정·관리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여 "양주시"에서 전체 구간에 대해 수립·지정하고, 파주시 구간에 대한 "종합계획" 고시, 지형도면고시 등 제반 행정 사항이 "파주시"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파주시는 양주시에서 제출한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지형도면 고시 및 등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.

제4조 (사업의 시행과 관리)

- ①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 시기, 사업비 부담, 사업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"양주시"에서 추진한다.
- ② "양주시"에서 「소하천정비법」 제8조에 따라 적성천 정비를 시행하는 경우, 정비 구간 등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.
- ③ 적성천 전체 구간의 유지관리(준설, 위험 수목 제거, 풀 깎기, 수해복구 등)는 「소하천정비법」 제3조제6항에 따라 적성천을 지정한 양주시에서 시행한다.

제5조 (사업의 완료)

대상 소하천에 대한 사업의 완료 시 소하천의 경계 구간에 대해 상호 입회하에 공사 완료 확인을 거치고 준공 관련 서류를 "양주시"는 "파주시"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 (협의내용의 변경 및 기타사항)

본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"양주시"와 "파주시"가 상호 협의 결정한다.

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"양주시"와 "파주시"가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4월 30일

"양주시" 양주시장

권한대행 부시장 김 정 일



"파주시" 파주시장

김 경 일 (인)



소하천점용허가 공고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10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(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점용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3일

파 주 시 장

하천명	점용자	점용자 주소	목적·개요	점용위치	면적 (㎡)	점용기간
망굴천	한국전력 공사 파주시사	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60	전주설치	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258-12	0.444	'26.06.05.~ 30.12.31.
노패개울1 천	법원읍	경기도 파주시 사임당로 907번길 21	도로개설	경기도 파주시 웅담리 260-1	176	'26.06.19.~ 30.12.31.
대명골천	김*리	경기도 파주시 하우3길 90-27	배수관설치	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540-24 외 1필지	4	'26.06.23.~ 30.12.31.

파주시 공고 제2026-1944호

도로공사시행 허가【시도1호선 신설 및 확장(남측)】 공고

도로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(사업기간 연장)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6. 7. 3.

파 주 시 장

도로의 종류	시도	노 선 명	1호선
공사의 종류	시도1호선 신설 및 확장공사 - 남측 : 출판단지~삼다리사거리		
구 간	- 남측 : (시점) 파주시 서패동 13-3(출판단지삼거리) / (종점) 파주시 동패동 1311-4(삼다리사거리)		
공사시행 장소	- 남측 : 파주시 문발동, 신촌동, 연다산동, 다율동, 오도동, 교하동 일원		
기 착수일	- 남측 : 2018. 9	준공예정일	- 당초 : 2026. 6. 30. - 변경 : 2026. 12. 31.
목적 및 이유	(목적) 파주운정3지구의 원활한 교통 통행 및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(이유) 공사기간에 맞춰 도로공사시행 기간 연장		
사업 시행자	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(대리인 경기북부지역본부 파주사업본부장)		

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우리시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자에 대하여 「하천법」 제69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하고자 하였으나,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1. 공 고 명: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: 2026. 7. 3.(금) ~ 7. 20.(월) (17일간)
3. 공고장소: 시보 및 홈페이지
4. 법적근거: 「하천법」 제33조 및 제69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
5. 공시송달 대상
6. 고지사항

가.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, 「하천법」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실시하며,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및 관련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.

7. 의견제출: 불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'26. 7. 20.(월)까지 제출(방문 또는 우편)
- 주 소: 경기도 파주시 소리천로 111, 2층 하천관리과 (물순환시스템수처리장)
8. 문 의 처: 경기도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 하천행정팀(☎ 031-940-5063)

2026년 7월 3일

파 주 시 장

붙임	공시송달 공고대상
----	-----------

연번	행위자	하천명	불법점용위치	위반내용
1	미상	소위지천	경기도 파주시 맥금동 1209-1	경작

1. 경기도 파주시 맥금동 1209-1번지 일원

위치도



현장사진(경작)



파 주 시

수신자 하천 불법점용 행위자 귀하
(경유)

제 목 처분사전통지서(의견제출통지)

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정된 처분의 제목	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						
당사자	성명(명칭)	미상					
	주 소	미상	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1. 처분원인 : 「하천법」 제33조(하천의 점용허가 등)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 지 않고 국가·지방하천 구역 내 불법 경작 및 불법 물건 적치 2. 위반내용 가. 위 치 : 위치도 참조 나. 행위내용 : 국가·지방하천 구역 내 불법 경작 및 불법 물건 적치 다. 행위상세 :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	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원상회복 명령(기한 : 2026. 7. 20.)	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하천법」 제33조(하천의 점용허가 등), 「하천법」 제69조(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)						
의견제출	제출처	기관명	파주시	부서명	하천관리과	담당자	문채혁
		주소	경기도 파주시 소리천로 111, 2층			전화번호	031-940-5063
		전자우편 주소	hyuk1027@korea.kr			팩스번호	031-940-5059
	제출기한		2026년 7월 20일까지				

<의견제출 시 유의사항>

-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.
-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파 주 시 장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
		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파주시장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